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69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김태호 · 우재준 · 주호영  
최수진 · 엄태영 · 조지연  
강명구 · 최형두 · 한기호  
정점식 · 김 건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률 제 호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